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(송 순 효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-86 |
|----------|---------|

발의연월일: 2020년 8월 일

발 의 자: 송순효, 신낙형, 김동협, 박성호

이충현, 강선영, 정정희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
나. 장기등, 인체조직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
다.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라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4조)

- 마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바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·운영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- 사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.(안 제7조)
- 아.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)
- 자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.(안 제9조)
- 차. 표창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)
- 카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- 1)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, 제13조
- 2)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7조의3, 제27조,

나. 협조부서: 보건소 의약과

다. 입법예고: 2020. 9. 4. ~ 2020. 9. 8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기등”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장기이식법”이라 한다)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.
2. “인체조직”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인체조직법”이라 한다)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”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”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5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”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 하는 서울특별시

강서구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6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”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
2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·운영)

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

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강서구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

1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
2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

제7조(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)①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)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민간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9조(예우 및 지원)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보건소 진료비 감면
2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3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

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

1.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보건소에 등록한지 3년이 경과된 사람
2. 타 지역거주자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

제10조 (표창)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1의 비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7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

제4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□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, 제13조

제3조(장기등기증자의 존중)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 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 7. 30.>
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(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
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3.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
4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·이식 관련 교육

제13조(장기이식등록기관) ① 장기등기증자, 장기등기증희망자,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(이하 "등록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
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
4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

"공공기관"이라 한다)

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.

<개정 2017. 10. 24.>

1. 장기등기증희망자·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

2.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 검사에 관한 업무

3. 장기등기증희망자·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·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

4.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

5.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·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7조의3, 제27조

제5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,

조직의 기증·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. 28.]

제7조의3(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) ①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.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6. 2. 4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의료기관
3.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직기증자 접수·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
2.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·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게 통보

3.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
4.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
5. 그 밖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
2. 제13조제2항제1호·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
3.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

⑤ 그 밖에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. 28.]

제27조(조직기증 지원사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
2. 조직의 기증·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

3. 조직기증희망자 표시(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, 조직기증지원기관,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·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·관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·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28.]